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54호
----------	-------

2019. 10. 22.

건명	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(행정자치위원회)		
제안 및 제출자	최정숙의원 외 7명	제안연월일	2019. 10. 14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10. 14.

## 보 고 내 용

###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(안 제2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- 라. 아동보호구역의 지정·공고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
(안 제4조~제5조)
- 마.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(안 제6조)
- 바.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정비·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사.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,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9조~제11조)

## □ 검토의견

-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29조, 제30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